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소형박리기업의 소득세 특혜정책 범위를 진일보 확대할 것에 관한 통지**  재세[2015]99호  각 성·자치구·직할시·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장(新疆)생산건설병단 재무국 :  소형박리기업의 경제발전 및 사회취업 촉진 등 적극적인 기능을 발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하에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.  1.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,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20만위안~30만위안(30만위안 포함)인 소형박리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50%를 과세대상 소득에 산입하여 20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.  전 항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,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소형박리기업을 지칭한다.  2. 소형박리기업 조세특혜정책의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연말정산의 편리성을 진일보 도모하기 위하여 이 통지에서 규정한 소형박리기업이 2015년 10월 1일~2015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소득은 2015년 10월 1일 이후의 경영 월수가 2015년 경영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.  3. <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에 관한 재정부·국가세무총국의 통지>(재세[2015]34호)는 계속 집행한다.  4. 각 급 재정·세무부서는 이 통지의 규정을 엄격히 따라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특혜정책의 선전 및 지도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함으로써 특혜정책이 실행되도록 보장한다. 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 2015년 9월 2일 |  | **关于进一步扩大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范围的通知**  财税[2015]99号  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：  　　为进一步发挥小型微利企业在推动经济发展、促进社会就业等方面的积极作用，经国务院批准，现就小型微利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：  　　一、自2015年10月1日起至2017年12月31日，对年应纳税所得额在20万元到30万元（含30万元）之间的小型微利企业，其所得减按50%计入应纳税所得额，按20%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。  　　前款所称小型微利企业，是指符合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及其实施条例规定的小型微利企业。  　　二、为做好小型微利企业税收优惠政策的衔接，进一步便利核算，对本通知规定的小型微利企业，其2015年10月1日至2015年12月31日间的所得，按照2015年10月1日后的经营月份数占其2015年度经营月份数的比例计算。  　　三、《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通知》（财税〔2015〕34号）继续执行。  　　四、各级财政、税务部门要严格按照本通知的规定，做好小型微利企业所得税优惠政策的宣传辅导工作，确保优惠政策落实到位。  财政部  国家税务总局  　　2015年9月2日 |